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 건설업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입법 취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공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공사를 수주 받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더라도 관련 당사자만 처벌될 뿐 당해 건설업체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공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 시키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하여는 1년 이내(시행령상에는 8개월로 규정)의 영업정지 또는 등

록 말소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8조의2, 제83조 제12호 및 제95조의2).

### 3. 법 적용 대상 및 범위

- 식사, 유홍, Golf, 선물, 기념품, 상품권, 현금 等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경우.
- 턴키, 재개발/재건축, 민간 등 모든 영업분야가 제재 대상 임.
- 설계변경, 도급계약의 확정과 관련한 발주처 및 착·준공시점의 공사인허가와 관련한 관공서와의 부정한 청탁이 해당되며, 기타 관공서 등(경찰서, 소방서, 언론사 등)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협조차원 행위는 제외됨.
- 현장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

### 4. 건설산업기본법 신,구 조문 대비표

표 1 참조

## 법규소식



표 1. 건설산업기본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 38조(불공정 행위금지)</b>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8조 2호 신설) 제38조의 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b>제 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b>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11. (생략)	(제 83조 12호 신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1.~11. (현행과 같음)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b>제 95조(벌칙)</b>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제 95조 2호 신설)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